

7.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12 . 16 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1월 18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4차(2003.12.16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연 수)

가. 개정이유

-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[별표 2]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,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것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점용료 산정기준 [별표] 제10호(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에 대한 점용료 세분)
 - 농업 및 식물재배 : 0.005 → 0.01
 - 주택 : 0.005 → 0.025
-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함
 - [별표]제1호 점용물의 종류중 “공중전화”를 “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”으로 함
-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·길이 등을 산정할 때 1m'(또는 1m)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.5m'(또는 0.5m) 이상 1m'(또는 1m)미만의 경우에는 1m'(또는 1m)로 계산함

다. 개정근거

-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(점용료의 산정기준) - [별표 2]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가. 주요골자

- ☐ 점용료의 종류 중 “공중전화”를 “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”으로 개정(별표의 제1호)
- ☐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공작물·물건 및 시설란의 “농업·주택 및 식물재배 0.005”를 세분하여 “농업 및 식물재배 0.01, 주택 0.025 로 개정(별표의 제10호)
- ☐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·길이 등을 산정 할 때 1m'(또는 1m)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.5m' (또는 0.5m)이상 1m'(또는 1m) 미만의 경우에는 1m'(또는 1m)로 계산함(별표 비교의 제3호)

나. 검토의견

- ☐ 2002년 5월 6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(별표2)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- ☐ 개정안에 의하면 점용료 산정기준 중 주택인 경우에는 최고5배까지 점용료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점용료가 10%이상 증가될 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 부과하기 때문에 사례별 점용료는 20%~30%정도가 상승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점용료 납부에 따른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